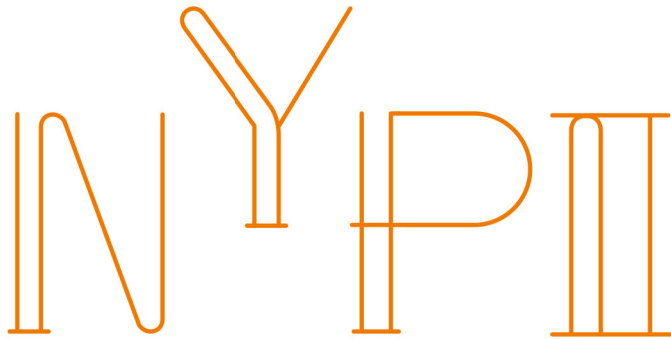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현황과 전망 :

생애과정 연구를 중심으로

책임연구원 김현철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현황과 전망 : 생애과정 연구를 중심으로

- ▶ 책임연구원 : 김현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연구보조원 : 김선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위촉연구원)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생애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이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밝히고,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배치와 임용을 확산하여 청소년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확산적으로 정의하고자 하였다.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기존의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에 대한 정의가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라면,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확산적인 정의는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 청소년육성업무 관련 전문직 공무원, 기타 청소년육성업무를 담당하는 학교,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청소년육성업무 담당부서 및 직영시설에서 청소년육성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다. 확산적인 정의가 필요한 이유는 청소년육성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활동영역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대구시 수성구에서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가 처음 만들어지고, 이 조례에 의해 첫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이 채용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직영의 청소년수련시설이 많아지면서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의 신분으로 활동하는 공무원도 늘어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 및 지자체에서의 전문직위제 및 민간경력채용의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그 영역은 그간 고려해오던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여성가족부)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확산적인 정의에 따라 전국의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60여명의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확산적인 정의의 범위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생애과정조사를 한 결과, 청소년지도자로서의 경력을 토대로 한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청소년육성업무 담당 공무원, 지자체의 직영 청소년수련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여러 부처 산하 국립시설의 공무원 등 근무처도 다양하고, 임직경로도 다양하다. 이들은 일단 공무원 사회에 진입했지만, 승진 등의 인사행정에서 일반행정직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거나 한계를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보수교육

등 전문성계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청소년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무엇보다 중요하다.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확산적으로 정의하고 인력충원 및 확산을 위한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청소년지도사를 기반으로 하는 청소년행정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뿐아니라, 예비 청소년지도자와 현직 청소년지도자들에게는 보다 폭넓은 생애경력개발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제의 도입은 반드시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직렬화하는 방법뿐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대구시 수성구와 같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제정과 조례에 의한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임용사례를 만들어가고, 지자체 평가지표 반영 등의 방법으로 지자체의 사례를 늘려가는 것도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제를 실현하는 보다 현실적인 방법이다. 또한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기반으로 청소년육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성계발 교육을 확산하는 일은 청소년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과업이다.

핵심어: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청소년육성 전담기구, 민간경력채용, 청소년지도사

목 차

제Ⅰ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연구내용	5
3. 연구방법	6
제Ⅱ장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현황 분석	9
1.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확산적 정의	11
2.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관련 제도 현황	15
3.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현황	23
제Ⅲ장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생애과정 분석	27
1. 자료의 수집	29
2. 분석결과	32
3. 종합	39
제Ⅳ장 결론 및 정책제언	41
1. 결론	43
2. 정책제언	44
참고문헌	49

부 록	53
1.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현황 및 생애과정조사지	55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57
3. 청소년기본법(일부조항)	60
4.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일부조항)	61
5. 사회복지사업법(일부조항)	62
6. 아동복지법(일부조항)	63
7. 공무원임용령(일부조항)	64
8. 공무원임용시험령(일부조항)	66
9. 지방공무원법(일부조항)	67
10. 행정직군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	68

표 목 차

〈표 II-1〉 공무원 직종개편 개요	19
〈표 II-2〉 전문경력관의 직무군	20
〈표 II-3〉 서울시 전문관 현황(아동청소년분야)	22
〈표 II-4〉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현황 (2015년 10월 현재)	26
〈표 III-1〉 생애과정조사지 구성	29
〈표 III-2〉 생애과정 조사대상 일람	30

그림 목 차

【그림 Ⅱ-1】 공무원 직종개편 개요	19
【그림 Ⅱ-2】 국가계약직 개편방안	21
【그림 Ⅱ-3】 지방계약직 개편방안	21

제 I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제 I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청소년기본법」 제25조는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과 관련된 유일한 법적 근거이다. 그렇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제의 도입이나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배치를 위한 조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실상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직렬을 새롭게 만드는 데는 많은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별도의 직렬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제의 유일한 모델이다. 지금까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제의 필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도입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관련 연구도 2004년에 이루어진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연구(이경상, 최원기, 여영진, 2004)가 유일하다.

그간 청소년정책의 인프라는 양적으로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질적인 변화는 그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현철, 임희진, 정효진, 민경석, 2013).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제의 도입은 청소년정책의 질적인 도약을 위한 핵심적인 대안 중의 하나이다. 청소년정책담당 지방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공무원들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 왔으며, 그 대안으로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이경상, 최원기, 여영진, 2004; 관계부처합동, 2012; 여성가족부, 2014a; 여성가족부, 2014b). 그렇지만, 원론적인 차원에서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뿐, 정책적으로 접근이 어려웠던 것은 지금까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별도의 직렬화하는 모델을 상정했기 때문이다. 즉,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도를 모델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제에 대한 높은 요구와 관심에도 불구하고 현상황에 대한 파악 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확한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최근 청소년지도자들이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제라는 제도의 틀 안에서 채용된 것은 아니며,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이라는 공식적인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도 않다. 아직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부터가 숙제로 남아있다. 이 점은 본 연구에서 가장 먼저 다뤄야 할 주제이다. 현재로서는 다양한 사례들로부터 귀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공무원 임용 정책의 변화와 각 사례들의 특성을 정리하면,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어느 범위까지 정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관심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제의 도입보다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자의 생애과정에 관심을 두고자 한다. 달리 말하면, 직업으로서의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에 대한 연구이다. 이들이 어떤 경력과정을 통해서 현직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이후의 삶과 그 이전의 삶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는 것도 이 연구의 주요한 관심사이다. 이를 통해 이들이 청소년정책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은 한 때는 청소년지도자로서 일했고, 현재는 청소년정책 실무자로서 청소년지도자와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속해 있는 기관이나 직책에 따라서는 신분이 공무원이라는 점이 다를 뿐이지 청소년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들의 직업인으로서의 생애과정을 분석하면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제 도입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진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청소년지도자들의 새로운 직업모델을 제시할 수도 있다. 청소년지도자의 직업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단순히 청소년지도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직업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소년정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직업적 안정성과 전문성은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다. 낮은 직업안정성은 잦은 이직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전문성 확보의 가능성도 떨어진다. 직업적 안정성은 전문성을 낳고, 전문성은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인다.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생애과정 연구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생애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이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밝히고,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배치와 임용을 확산하여 청소년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2. 연구내용

1)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정의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기본법 제25조의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에 대한 규정이 유일하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본법 제25조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시작해서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이 무엇인지 논하고자 한다. 현재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은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채용되거나 배치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들이 어떻게 채용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채용사례들은 다양한 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지자체별로도 차이가 난다. 지자체 직영 청소년시설이나 기관의 설립이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수적 증가를 가져온 측면도 있다. 이러한 모든 측면을 고려하여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새롭게 정의하고자 한다.

2)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및 정책 현황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도를 비롯해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민간경력자 채용제도 그리고 지방공무원 직종 개편 등의 정책변화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과 관련이 있거나 영향을 주는 변화들이다. 이들 정책의 흐름을 파악하고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전망을 제시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현황을 파악하는 일이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중에는 어떤 유형의 채용사례가 있으며, 지자체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일도 필요하다. 크게는 관공서에서 청소년육성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과 직영시설 등에서 청소년지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지만, 지자체나 시설에 따라서도 업무는 다양하다. 직급도 다양하다. 이와 같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현단계의 문제를 진단할 수 있으며,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찾을 수 있다.

3)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생애과정 분석

본 연구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제가 아닌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들의 생애과정에 일차적인 관심을 갖는다. 현직에 대해서만 아니라 청소년지도자로서 살아온 생애과정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경력과정이나 입직과정, 현직에서의 역할, 과거 경력과정에 대한 회고적인 기술과 현직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직업인으로서 청소년지도자의 삶에 초점을 맞춰 생애과정을 하고자 한다.

4)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확충 방안 제시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제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진단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확충해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진단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한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운용에 관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과 관련된 그간의 선행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다. 다만, 참조할만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와 관련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다. 그렇지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처럼 별도의 직렬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숙고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황을 파악하고, 현재의 공무원임용에 관한 법제도적인 현 상황을 분석하였다.

2)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현황 조사 및 사례연구

국가 및 지방공무원 중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근무지역별로 근무부서, 직급, 직위, 자격증 소지여부 등을 파악하였고, 추가적으로 직무내용 및 직무만족도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또한 지역 사례 및 기관별 사례를 분석하였다.

3) 생애기록지분석 및 면접조사

면접조사 실시에 앞서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들에 대해서 생애기록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면접조사를 통해서 얻은 정보는 가끔씩 부정확한 정보가 발화되거나 생략되는 등 정보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먼저 생애기록지를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바탕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생애과정을 분석하였다.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여 생애기록지의 양식을 만들었고 생애기록지에 현직과 관련된 정보, 그간의 경력사항, 지금까지의 경력사항 중 특이사항들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총 25명의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추가적인 내용은 전화 또는 면대면 면접을 통해서 조사하였다.

4) 워크숍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전국 현황을 파악한 후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10월 21일, 22일). 워크숍을 통해서 사례를 공유하고,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며, 워크숍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조사할 사례를 발굴하였다.

5) 네트워크의 구축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상호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후속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워크숍을 통해서 지역간 협력과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청소년정책 전담공무원 협의회'가 구축되었다.

제 II 장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현황 분석

1.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확산적 정의
2.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관련 제도 현황
3.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현황

제 II 장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현황 분석

1.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확산적 정의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에 대한 가장 단순하면서도 유일한 정의는 청소년기본법 제25조 제1항의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제26조에서 정의되고 있는 청소년육성 전담기구 설치에 관한 조항도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과 관련이 있다. 제26조에서는 청소년육성 전담기구 설치에 관해서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청소년기본법의 두 조항, 즉 제25조와 제26조에 따라 정의하면, ‘청소년육성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이면서 청소년지도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 청소년육성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이란 지자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즉 지방공무원으로서 청소년육성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이거나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에서 청소년육성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이다. 그러나 ‘청소년육성 업무를 전담한다’거나 ‘청소년육성 전담기구’라는 표현은 다소 모호하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서 청소년육성을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소년육성업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육성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이라는 규정도 모호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정의도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정의처럼 간단하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분명히 구분되는 것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별도의 직렬이기 때문이다(부록10 참조). 따라서 정의가 단순해도 그 범위가 명확하다. 반면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별도의 직렬이 없기 때문에 그 범위를 정하기 어렵다.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정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이다. 국가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적어도 청소년기본법이 규정에 따르자면,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지방공무원에만 해당한다.

둘째,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설사 청소년육성업무를 전담하고 있더라도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면,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이 아니다.

셋째, 반드시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에 속한 공무원일 필요는 없다. 청소년기본법이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임의규정이다. 청소년육성 전담기구를 두고 있는 지자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에서 청소년육성전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없다면,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넷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근무연한에 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위의 조건을 갖추었다면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인 것이다.

다섯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을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여부로 판단하는 셈이다.

여섯째, 별도의 직렬에 대한 규정이 없다. 지자체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임용에 대한 조례를 통하여 임용할 있도록 되어 있을 뿐이다.

청소년육성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지방공무원의 수는 2014년 현재 125명으로 파악되었다(강영배, 김기현, 2014).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많겠지만, 엄밀히 말해서 이들을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이라고 할 수는 없다.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이 별도의 직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이 보다 명확한 근거를 갖게 되려면, 청소년기본법 제25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이 조례에 의해 임용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는 유일하게 대구시 수성구만에 있다. 2016년에 최초로 조례에 의해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이 임용될 예정에 있지만(석철,

2015), 현재까지 조례에 근거하여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이 임용된 사례는 없다.

이와같이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한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그 범위가 제한적이고 모호하다. 이 점은 향후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임용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가야 하는지 논의할 때 핵심사안이 될 것이다.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첫 번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이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는 논리의 핵심은 전문성에 있다. 청소년육성업무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는 논리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은 청소년육성업무를 전담하거나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했느냐의 여부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물론 청소년육성업무를 전담하거나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청소년육성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청소년육성업무를 전담하면서 국가자격인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갖추었다면, 일정 수준의 전문적 역량을 갖춘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이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뒤에서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 다루게 될 것이지만,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소지하지 않았더라도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 수 있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더욱이 현재로서는 청소년육성업무 담당자를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소지자로 제한할 법적인 근거도 없다.

두 번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에 관한 것이다.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이다. 그렇지만, 인사이동 없이 한 사람이 계속해서 청소년육성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아니며, 또 그렇게 될 수도 없다. 다만, 너무 잦은 인사이동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어느 정도의 기간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없다. 다만, 인사이동이 너무 잦아도 너무 더더도 문제다.

세 번째, 청소년육성 전담기구 설치에 관한 것이다.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서 각 지자체가 청소년육성 전담기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사례는 매우 드물다.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성격 규정도 명확하지 않다. 청소년육성업무를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정책사업에 한정지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시도의 경우도 그렇거니와 더욱이 시군구로 내려가면, 청소년정책업무만을 따로 전담하는 기구를 두기가 쉽지 않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청소년육성업무가 아동업무나 복지업무 등과 혼재되어 있다. 인력구조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나 지자체가 청소년육성업무를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사업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2014년에 서울시 송파구에 청소년정책과가 최초로 설치되었지만, 실제 이 부서의 업무는 아동복지업무를 포괄하고 있다. 대전시 동구청의 경우에는 문화공보과 청소년담당(청소년계에 해당함)이 청소년육성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대전시 동구청의 청소년담당이 맡고 있는 업무는 주로 청소년육성전담업무이지만, 일부 사회복지, 아동 관련 업무도 포함되어 있다(대전시 동구청, 2015). 서울시는 청소년담당관에서 아동복지업무를 같이 담당하다가 2015년부터 아동복지팀(가족담당관)이 분리되면서 청소년담당관에서는 청소년육성업무만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청소년육성 전담기구를 두고 있는 사례로 봐야 할 것이지만,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의거한 조직편성은 아니다. 또한 서울시 청소년담당관의 업무를 보면, 청소년정책업무 중 중앙부처 관련 업무도 있지만, ‘청소년 휴카페’ 등 서울시 자체 사업도 있기 때문에(서울시청, 2015) 청소년육성업무 전담이 주는 의미는 지자체마다 다르다. 이러한 조직편제와 사업의 추진은 어디까지나 지자체의 관심 여하에 달려있다.

네 번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직렬화 문제이다. 지금까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제 도입에 대한 요구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하여 거의 어떤 정책적인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것은 그 만큼 별도의 직렬을 만드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별도의 직렬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소년육성업무담당을 별도의 직렬화할 만큼의 전문성이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또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별도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안 받고의 문제 이전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내에서조차 직렬을 없애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2장 2절 참조),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직렬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정의하거나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제 도입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 적지 않다.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아주 엄격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정의한다면, 청소년기본법에 충실한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에서 청소년육성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 중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고, 다소 느슨한 정의라면, 청소년육성 전담기구라는 조건을 뺀 “청소년육성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 중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데, 최근 공무원 인사정책의 변화 등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 많아진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엄격하게 정의하기보다는 확산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영 청소년수련시설이 증가하면서 이들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증가했다. 둘째, 청소년육성업무 전담 또는 담당 공무원의 임용과 배치과정이 다양해졌다. 셋째, 지방공무원 뿐아니라 국가공무원까지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고 있다. 넷째, 청소년정책 주무부처 이외의 행정부서와 공공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 중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임용사례들이 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확산적으로 정의하고, 그에 따라 그간에 논의해오던 다른 방식, 즉 청소년기본법에 준하거나 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사례에 준하여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인식하던 방식과는 다르게 새로운 관점에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별도의 직렬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면,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확산적으로 정의하기보다는 엄격하게 정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정의하는 것과 같이 단순하게 정의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 이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면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확산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보다 현실적이고 유용할 수 있다. 즉,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라는 국가자격증을 기반으로 청소년육성전담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확산하는 것이 정책의 궁극적 목표라면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확산적 정의가 더 바람직할 수 있다.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관련 정책현황과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생애과정 분석을 토대로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확산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관련 제도 현황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의 현황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현황과 직렬통합의 움직임

별도의 직렬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다. 공공사회복지행정 분야에 사회복지전문가가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1961년 아동복지법과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정 이후 아동복지지도원과 부녀상담원을 배치하기 시작하면서 부터지만, 자격증에 근거하여 본격적으로 공공 전문인력

인 사회복지전문요원(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배치된 것은 1987년부터이다. 이 때 49명이 배치된 것을 시작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정부예산편성에 따라 별정직 7급 지방공무원으로 배치되었고, 보건복지부 훈령 제2조에 의한 직무 및 관리운영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선발 배치하였다. 2000년 전후로는 별정직이었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사회복지직으로 전직되었다(김이배, 2014).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모델로 여겨져 왔다(이경상 외, 2004). 그렇지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러싼 최근의 변화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한다. 다른아닌 직렬통합의 움직임이다. 최근 사회복지직렬을 일반행정직렬과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반드시 반대만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직렬통합에 찬성하는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김이배, 2014). 이것은 사회복지전달체계 내의 전담공무원의 위상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이 같은 움직임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될 필요가 있다.

(2)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배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아동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시·도 및 시·군·구에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제13조(아동복지전담공무원) 조항을 두고 있다. 2012년 아동복지법 전부개정 이전에는 아동복지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복지지도원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자격은 국가 자격증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그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를 통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은 지역내 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조치,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확인 및 지도·감독 등 지역에서의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수행이며,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원활한 지역내 업무수행의 협조를 위해 아동관련 행정기관, 아동복지전담기관,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단체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전담공무원의 업무를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아동복지법 제 13조).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은 별도의 직렬은 아니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아동복지지도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2년에 아동복지법 개정 이전의 아동복지지도원에서 아동복지전담공무원으로 개칭되었지만, 현재까지 전국적인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담당부서에서의 인지도도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로서는 별도의 직렬도 아니고, 사회복지직렬의 직류¹⁾에 속하지도 않는다. 향후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 더 많이 배치되더라도 별도의 직렬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류로 편입될 가능성은 있지만 직렬통합의 문제가 수면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불분명하다.

그런데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업무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의 시도는 물론 시군구 및 읍면동의 경우 아동복지업무와 청소년육성업무가 혼재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1990년대말 청소년육성담당 별정직 공무원의 직종개편을 검토할 때 일부 지자체에서 사회복지직렬의 직류로 사회복지, 아동복지, 청소년육성으로 개편하는 안이 검토된 바 있다(대전시 동구청, 연도미상). 이와 같은 방식이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제를 도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이 경우에는 청소년육성업무의 전문성이 사회복지 전문성 안에 편입되는 문제점이 있다.

2) 전문직위 확대와 민간경력자 채용

(1) 국가공무원의 민간채용

2010년 외교부에서 장관 자녀 특채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2011년부터 각 부처 특별채용(특채)이 행정안전부(현 인사혁신처)의 부처수요 파악을 거쳐 연1회 경력자를 대상으로 일괄채용하는 방식(경력경쟁채용시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으로 변경되었다.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임용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청소년 분야에서는 2012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임용시험을 통해 1명의 인력이 공무원으로 채용되었다. 이외에도 기존에 2명이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있으며, 2명 중 1명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2015. 1. 1)되어 현재는 1명만 남아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 제10조(청소년정책위원회)와 동법 시행령 제3조 3항 “청소년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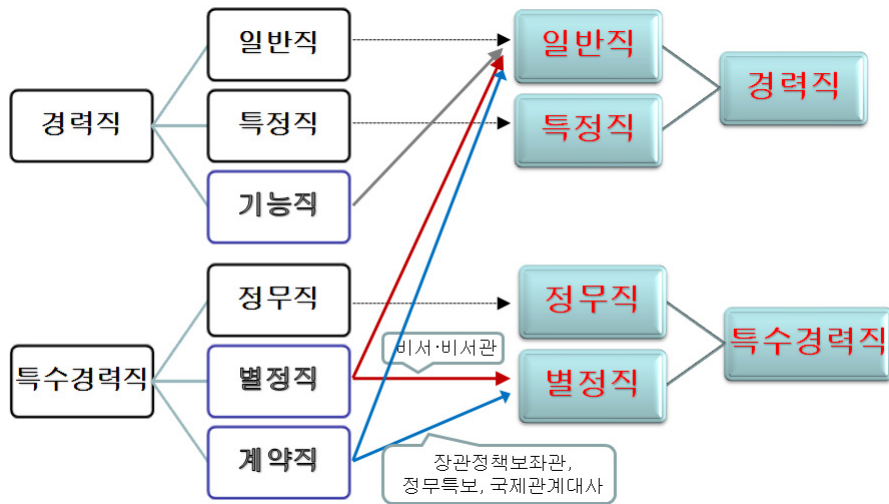
1) 일반공무원의 계급은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으로 구분한다(공무원임용령 제13조 제1호).

위하여 위원회에 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하여 전문위원 4명이 임용되어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25조에 의거한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어디까지나 지방공무원에 한정지어 규정되어 있으나,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확산적으로 정의할 때에는 국가공무원까지를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청소년행정의 전문성 확보라는 측면이 중요하다면 국가공무원을 배제시킬 이유는 없다. 더군다나 최근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전문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민간경력자 채용의 범위도 점차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도 이 추세에 따를 필요가 있다. 청소년 분야 국가공무원직에도 일반임기제공무원 특별채용(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2항)의 사례가 있었고, 별정직 공무원과 전문위원(현 4명) 그리고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채용 사례를 의미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채용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전문성이고, 다른 하나는 지속성이다. 즉, 청소년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또 그 업무를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맡아야 한다. 여기서 지속성이란 반드시 다른 직렬이나 다른 업무부서로의 이동을 단절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해당분야에서 업무를 습득하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룰 수 있을 정도의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지방공무원의 경우

현재 대부분의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와 직영시설 근무자의 직종변경에 의한 경우이다. 그런데, 2013년 12월 12일 시행된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별정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통합되었다. 일부분은 일반행정직으로 전환되었고(예, 서울시, 대전시 유성구, 동구), 나머지 대부분의 별정직 공무원은 전문경력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안전행정부, 2013). 그러나 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승진과 겸임 그리고 파견 등 제반 분야에서 있어서는 여전히 별정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일반행정직에 비해 불리하다.



출처: 안전행정부(2013.7.31.). 직종개편 세부추진방안

【그림 II-1】 공무원 직종개편 개요

표 II-1 공무원 직종개편 개요

업무성격	1단계 : 일반직 전환	2단계 : 유사직렬로 전직
기존 일반직에 유사 직렬이 있는 경우 (토목, 기계 등)	■ 관리운영직군으로 무시험 전환 * 예) 기능직 토목직렬 ⇒ 관리운영직군 토목운영직렬 * 직렬명이 기존 일반직 직렬(직류)명칭과 동일한 경우 “운영” 추가	■ 행정·기술직군내에 유사직렬로 시험을 거쳐 전직 * 관련 자격증 또는 학위소지시 필기시험 면제 * 전직 미희망 또는 불합격시 신분변동 없으며, 관리운영직군에서 퇴직시까지 근무 ■ 종전 기능5급(지방직)에 대해서는 전직시험 면제
업무성격	직렬신설	
기존 일반직에 유사 직렬이 없는 경우 (방호, 운전 등)	■ 행정·기술직군 내에 직렬을 신설하여 무시험 전환 * 예) 기능직 방호직렬 ⇒ 행정직군 방호직렬(신설) ■ 정보통신현업의 경우, 2~9급에 걸쳐 2만여명이 재직하는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정직군(우정1~5급)을 신설, 시험없이 전환	

출처: 안전행정부(2013.7.31.). 직종개편 세부추진방안

<그림 II-1>, <표 II-1>에서와 같이 일부 별정직 공무원 이외에는 모두 일반직화하되, 특정분야의 전문성이나 오랜경험이 요구되는 직무로서, 순환보직이 곤란하여 장기재직이 필요한 직위로서 전문경력관 제도를 도입하였다. 전문경력관은 계급·직군·직렬 구분없이 직무군(가,나,다)으로 구분하며, 각 직위별 직무군은 소속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현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다(안전행정부, 2013).

표 II-2 전문경력관의 직무군

직무군	업무성격
가군	매우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며, 난이도가 매우 높은 업무
나군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며, 난이도가 높은 업무
다군	숙련된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

출처: 안전행정부(2013.7.31.), 직종개편 세부추진방안

또한 일반직에 유사직렬이 있는 업무의 경우에는 유사직렬 전환 후 ‘전담직위’로 지정하고, 전담직위 평가 후 해제하도록 되어 있다. 전문경력관 이외에도 임기제공무원을 두고 있으며, 현재의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한다. 임기제공무원²⁾은 한시적 사업, 외부 우수인재 충원 등을 위해 일정기간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경력직(일반직 또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정년은 적용되지 않으나, 임기동안 신분은 보장된다. 기본적으로 현행 계약직 인사관리와 유사하나, 임용권자, 신분보장, 인사 발령 등에서 차이가 있다(그림 II-2, 3).

2) 지방공무원법(2013.12.12. 시행)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 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구분	개념	개편
일반계약직	경력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와 책임운영기관의 장위 직위에 채용 * 정원 20% 범위 내	일반임기제 * 일반직 직급명칭 사용(예: 행정사무관)
전문계약직	특수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 * 정원 외(예산범위내 채용)	전문임기제 * 현행 보수수준으로 구분(가~마급)
시간제계약직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일반계약직 또는 전문계약직공무원 * 일반 : 정원내, 전문 : 정원외 / 공무원연금 미적용	시간제임기제 * 일반·전문에 따라 직급명칭 부여
한시계약직	육아휴직·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을 위해 1년 이내 기간동안 채용되는 공무원(시간제근무로 채용) * 정원외 / 공무원연금 미적용	한시임기제 * 현행 보수수준으로 구분(5~9호)

출처: 안전행정부(2013.7.31.). 직종개편 세부추진방안

【그림 II-2】 국가계약직 개편방안

구분	개념	개편
전임계약직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여 채용	일반임기제 * 일반직 직급명칭 사용(예: 행정사무관)
시간제계약직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채용 * 정원외 / 공무원연금 미적용	시간제임기제 * 현행 보수수준으로 구분(가~마급)
		한시임기제(신설) * 현행 보수수준으로 구분(가~마급)

출처: 안전행정부(2013.7.31.). 직종개편 세부추진방안

【그림 II-3】 지방계약직 개편방안

또 하나의 사례는 서울시의 전문관 양성제도이다. 서울시는 2013년 1월에 「서울시 인재양성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다(서울특별시, 2013.1). 향후 공무원 2,000명을 ‘전문관’으로 양성한다는 계획으로, 이에 따라 2013년부터 7·9급 일반직 채용 규모의 10% 내외를 관련 분야 민간경력자로

뽑고 매년 새롭게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2014년에 수정된 계획에 의거하여 2015년에는 300명의 전문관을 채용하였으며, 2017년에는 700명, 2020년에는 1,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2014년 10월말 현재 373개의 전문직위를 지정하고, 234개(내부공모 199, 민간경력자 채용 35) 직위에 대해 전문관을 선발·배치하였다(서울특별시, 2014a). 전문관은 내부공모와 민간경력자 채용에 의해 선발, 배치한다. 이 계획에 의거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관으로 채용된 직위는 <표 II-3>과 같다. 청소년육성전담 전문관은 일반행정직렬의 내부공모로 채용된 사례이다. 민간경력채용은 다문화가족지원, 아동학대예방, 민간자원협력 직위이다.

표 II-3 서울시 전문관 현황(아동청소년분야)

구분	부서명	직렬	전문분야(채용직위)
전문관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행정	청소년육성 담당
전문관	평생교육정책관 친환경급식담당관	보건	학교급식 안전성 관리
전문관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	사회복지시설관리
민간경력채용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행정	다문화가족지원
민간경력채용	아동복지센터	사회복지	아동학대예방
민간경력채용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행정	민간자원협력

※출처: 서울특별시 (2014b). 서울특별시 인사과 내부자료.

※여기서 아동·청소년 분야는 행정상의 분류가 아니라 연구자가 서울시 내부자료에서 임의로 추출한 것임.

3)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임용조례 제정 사례

청소년기본법 제25조 제5항에 따르면,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조례가 제정된 사례는 대구시 수성구 사례 뿐이다. 대구시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그간 제기되어 온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필요성 때문이다. 즉, 공무원의 순환보직제도에 따라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다가 타부서로 자리를 옮기는 일이 너무 잦아 청소년 업무를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이다. 순환보직제도는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시행되고 있지만,

청소년 업무 담당자의 경우 인사이동이 잦아 청소년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줄곧 지적되어 왔다. 이에 대구시 수성구는 청소년업무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육성만을 전담하는 공무원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고, 2011년 8월 의원발의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례 제정 이후 두 차례의 조례 일부개정만 있었을 뿐, 실제로 조례에 의해 채용된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없었다. 2015년 5월, “교육도시를 표방하는 수성구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채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지 4년이 되도록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므로 즉각 시행하자”는 대구시 수성구 사회복지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2015년 9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 2016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하였다(석철, 2015).

2015년 말부터 채용절차에 들어가 2016년 1월부터 평생교육과 창의청소년계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9급)을 임용할 예정에 있다.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임용 조례에 의한 첫 임용사례가 될 것이다. 또한 전담공무원이 퇴직하거나 또는 휴직할 경우를 대비하여 1명의 전담공무원을 추가로 채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석철, 2015).

대구시 수성구 사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이 조례에 의하여 채용되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현황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지역별로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간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들로부터 각 지역의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명단을 작성하였으며, 그 다음 여성가족부의 협조공문을 통하여 각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단, 청소년기본법 제25조에 따라 현 청소년육성 담당공무원 중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의 명단을 파악하였다. 이 두 명단을 각 지역의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대상자를 통하여 확인작업을 하고, 일부 대상자들에게는 직접 전화를 걸어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에 해당하는지와 소속기관의 상황을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파악된 명단은 <표 II-4>와 같다. 이 명단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에 대한 확산적인 정의에 따른 것이다. 국가공무원 6명과 지방공무원 53명을 포함하여 총 59명으로

파악되었다. 관공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6명과 지방공무원 7명이다. 나머지 46명은 직영시설에 소속되어 있다. 일부 직영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부서업무도 동시에 맡고 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전문경력관은 모두 10명이며, 나머지 공무원은 일반임기제, 시간임기제, 무기계약직이다. 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이 가장 많은 27명이다. 또한 대구와 대전의 경우에는 일반행정직이다. 대전은 별정직에서 일반행정직으로 전환한 경우이며, 대구는 일반행정직 중에서 장기간 청소년육성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지역별로 보면,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이 한 명도 없는 지역은 서울시, 인천시, 광주시, 울산시, 세종시, 충북, 전남, 제주 등 8개 시도이다. 상대적으로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가 많다. 그렇지만, <표 II-4>의 현황은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다. 서울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오랫동안 별정직으로 청소년육성업무를 전담한 공무원이 있었지만, 2013년 직종개편 시 일반행정직으로 전환되거나 타부서의 전문관으로 전보되었다. 동시에 일반행정직 중에서 청소년육성 업무 담당 전문관이 배치되었다.

결국, 청소년 업무 전문성만을 기준으로 하면,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뿐 아니라 국가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으며, 전문경력직 또는 전담관 이외에 일반행정직도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전문경력관과 임기제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다. 무기계약직은 공무원 연금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신분 상 공무원으로 보기 힘들 수도 있지만, 무기계약직도 전문성을 기준으로 보자면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으로 볼 수도 있다. 또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같은 관공서이외에도 지자체 직영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다. <표 II-4>에는 통일부 산하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 6명도 포함되어 있다. <표 II-4>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기타 부처 산하의 국립시설(국립과천과학관 등) 등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를 포함하고, 또 각 교육청 산하의 학생교육원 소속 공무원까지 포함시키면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범위는 더 넓어진다. 현재 한반도통일미래센터와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생교육원은 청소년수련시설로 분류되어 있어서 소속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대상이다.

현재로서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직렬이 없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1명도 없는 상황이지만, 청소년육성업무를 실질적으로 전담하는 공무원, 특히 그 중에서도 청소년지도자의 경력을 가진 민간경력채용에 의한 공무원이나 공무원의 신분으로 다양한 형태로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통틀어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이라고 하면, 그 수는 많아진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다. 게다가 교사와 같은 전문직 공무원들 중에도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취득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들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계발하고, 육성하여 청소년지도 전문인력을 확산시키는 일은 청소년정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표 II-4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현황 (2015년 10월 현재)

지역	합계	관공서						직영시설					
		일반 행정직	전문 경력관	일반 임기제	시간 임기제	무기 계약직	소계	일반 행정직	전문 경력관	일반 임기제	시간 임기제	무기 계약직	소계
중앙부처(여성가족부)	6※	1	5				6						0
서울특별시	0						0						0
인천광역시	0						0						0
대전광역시	3	3					3						0
대구광역시	1	1					1						0
광주광역시	0						0						0
울산광역시	0						0						0
부산광역시	5		1				1		1	3			4
세종특별자치시	0						0						0
경기도	17						0			9	8		17
강원도	10			1			1		6	3			9
충청북도	0						0						0
충청남도	1		1				1						0
전라북도	1						0		1				1
전라남도	0						0						0
경상북도	11						0		5		3	3	11
경상남도	4						0		1	3			4
제주특별자치도	0						0						0
합계	59	5	7	1	0	0	13	0	8	27	14	3	46

※ 여성가족부의 경우에는 일반임기제 1명, 전문위원 4명, 전담직위(과거 별정직공무원) 1명임.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근무자는 경기도에 편입시킴.

제 III 장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생애과정 분석

1. 자료의 수집
2. 분석의 개요

제 III 장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생애과정 분석 : 직업으로서의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1. 자료의 수집

직업으로서의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생애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생애과정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현황표(표 II-4) 상의 59명 중 21명과 2명의 전직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직종개편 전 별정직 및 일반행정직 공무원) 등 총 25명이다. 오픈 문항으로 구성된 생애과정에 대한 조사지의 구성은 <표 III-1>과 같다. 생애과정 조사지를 활용하여 조사한 후 추가적인 내용을 면대면 인터뷰 및 전화인터뷰를 통해서 조사하였다. 단, 25명 중 2명(X, Y)은 면대면 인터뷰만을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자 일람은 <표 III-2>와 같다.

표 III-1 생애과정조사지 구성

조사항목	세부항목
(1)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이 되기까지의 경위	-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채용 이전의 청소년지도자 경력 -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그리고 기타 전문자격취득 사항육성전담공무원 채용 이전의 청소년지도자 경력 -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채용 이후 경력(직종개편 이전과 이후 구분)
(2)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채용과정	계기나 동기 또는 상황변화 등
(3)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채용이후의 경력	소속부서 직무,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채용 이전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 등 포함
(4)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필요성과 정책적인 필요성에 대한 생각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으로서의 애로사항,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업무와 관련 개선되어야 할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행정사항
(5)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채용이나 업무와 관련한 청소년지도자 양성과정에서의 반영사항	—
(6)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업무의 안정화 또는 채용 확대 등을 위한 방안	—

표 III-2 생애과정 조사대상 일람

대상	소속	직급	담당업무	청소년지도자 경력	공무원 경력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그 외 자격증
a	중앙부처	-	활동신고제, 인증제 등 활동안전사업	13년 3개월	2년 8개월	1급	중등정교사 2급, 특수학교정교사 2급, 평생교육사 2급, 정보처리기사 1급
b	지자체	지방행정주사보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11년 6개월	2년 0개월	1급	소방안전관리자 2급
c	중앙부처	일반임기제 (행정6급)	체험연수 총괄, 수련활동 인증,청소년운영위원회 수련시설종합평가	17년 3개월	8개월	2급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1급
d	중앙부처	일반임기제 (행정6급)		12년 1개월	1년 2개월	2급	사회복지사 2급
e	직영시설	-	-	-	-	-	-
f	지자체	전문경력관	청소년육성업무	15년 10개월	6년 11개월	1급	중등정교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여가지도자 2급
g	지자체	주무관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및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등	10년 3개월	3년 7개월	2급	-
h	직영시설	일반임기제 (행정8급)	수련활동, 포상제, 인증제, 봉사 등	9년 9개월	4년 10개월	2급	사회복지사 1급
i	지자체	전문경력관 나군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감독	2년 3개월	14년 7개월	1급	생활체육지도자 2급,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1급, 레크레이션 2급
j	중앙부처	일반임기제 (행정6급)	청소년 연수 활동	10년 6개월	1년 2개월	1급	평생교육사 2급, 레크레이션지도자 1급, 웃음치료사 1급

대상	소속	직급	담당업무	청소년지도자 경력	공무원 경력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그 외 자격증
k	중앙부처	일반임기제 (행정6급)	총괄업무	21년 5개월	0개월	1급	사회복지사 2급, 평생교육사 2급, 중등 정교사 2급
l	지자체	별정직 (직종변경 전)	청소년육성업무	0개월	21년 4개월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m	중앙부처	일반임기제 (행정7급)	프로그램 개발 운영	0개월	1년 2개월	-	-
n	지자체	전문경력관	청소년업무	4년 8개월	15년 11개월	2급	-
o	중앙부처	일반임기제 (행정6급)	-	16년 11개월	1년 2개월	-	-
p	직영시설	행정7급 (일반임기제)	기획, 운영	18년 7개월	7년 3개월	1급	-
q	지자체	별정직 (직종변경 전)	청소년육성업무	0개월	25년 6개월	-	-
r	직영시설	시간임기제(라급)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2년 0개월	1년 5개월	1급	사회복지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s	직영시설	행정8급 (일반임기제)	수련관 운영	13년 4개월	8년 5개월	1급	-
t	직영시설	전문경력관나군	청소년 정책, 행정, 사업 추진	0개월	20년 11개월	1급	-
u	직영시설	전문경력관 다군	청소년 육성	10년 6개월	15년 4개월	2급	정사서 2급, 레크레이션 1급
v	직영시설	전문경력관 나군	-	0개월	13년 11개월	-	-
w	직영시설	행정8급 (일반임기제)	-	7년 5개월	3개월	2급	사회복지사 2급
x	지자체	일반행정	청소년육성	0개월	5년	-	-
y	직영시설	전문경력관	청소년지도	-	15년	1급	-

2. 분석결과

1) 공무원세계로의 진입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은 청소년지도자 경력 이후에 공무원이 된 경우이다. 청소년지도자 경력은 다양하며, 경력기간은 짧게는 2년에서 20여년의 경력을 가진 경우 등 다양하다. 지자체 직영 수련시설이 민간위탁화되면서 공무원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는가 하면, 거꾸로 민간위탁에서 직영시설화하면서 공무원이 된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수련시설 지도자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전환된 사례이다.

2001년도에 ○○시에서 직영하던 ○○시 ○○청소년수련관이 민간위탁 되면서 수탁법인인 재단법인 ○○에 입사하여 ○○청소년수련관 수련활동 운영 및 행사 기획 업무를 보다가 같은 법인에서 ○○시 ○○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받자 ○○청소년문화의집 수련활동 기획업무를 맡아서 하게 되었고, 2001년 5월에 ○○시 ○○청소년수련관 지방별정직 공개채용에 합격하여 공무원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I).

청소년육성업무는 청소년활동 및 육성의 마인드를 가진 청소년지도사가 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할 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다는 생각도 동기의 한 요소로 피력되기도 했지만(I), 공무원의 안정적인 고용상황이 매력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경우가 가장 많다.

○○청소년수련관 운영법인 교체시기에 고용의 불안감을 가지고 ○○시에 응모하여 채용되었다(P).

○○(청소년정책사업 중 하나)에서 더 이상의 발전이 없음을 알게 되었고 ○○에서 청소년수련활동의 개념으로 청소년○○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응시하였다(J).

자신의 환경변화와 새로운 체제에서의 청소년활동을 하기 위함과 공무원이라는 안정된 직장이...
(K)

본인들의 직업적인 관심도 중요하지만, 대구시 수성구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지자체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 대구시 수성구의 조례제정 사례 말고도 지자체의 관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몇몇 사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구가 청소년 국가정책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2010년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사업(청소년정책 사업 중 하나)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의 채용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하고자...(G).

○○시의 경우 최초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될 때부터 직영운영형태로 운영을...결정한 사항이며, 이에 따라 배치기준에 근거하여 3명의 청소년지도사를 전담공무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청소년수련관이 하나의 사업소로 운영되면서 전담공무원의 의미가 없었지만...시 정책으로 ○○(청소년관련 부서의 하나로 통합되면서 청소년활동의 고유업무와 함께 전담공무원이 되었습니다(H).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사례(A)가 있는가 하면, 청소년기관에서 근무를 하다 국립시설의 임기제 공무원에 응시한 경우도 있다.

도 출연기관에서 근무하면서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에 지방정부의 지원 및 정책기확실행의 제약점과 대내외 제반 여건 등의 안정하지 못함에 있어 한계점등으로 고민 하던중 ○○센터 임기제공무원에 응시하여 현재 근무 중이다(C).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자 경력은 없지만,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이전에 별정직으로 채용되어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이 된 사례들도 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E, M, O, Q, V, X).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이들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이들은 오랜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행정업무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시의 전문관제도나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전담직위제는 반드시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요하지는 않는다. 이들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범주에 넣을 것이냐의 문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이 갖춰야 할 것 중의 가장 중요한 것이 전문성이라면, 이들까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 마디로 확장된 의미로서의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이 되는 통로는 다양하다. 현황조사결과와 사례조사를 종합해 볼 때, 확장된 의미의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다음 몇 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첫째, 청소년시설이나 단체에서 청소년지도자로 일하다 여성가족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민간경력자 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이다.

둘째, 청소년지도자로 일하다 타부처 국립시설 또는 타부처 관련 공공시설에 임용된 사례이다.

셋째, 청소년지도자 경력은 없지만,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청소년육성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우이다.

넷째, 청소년수련시설의 직영화와 함께 공무원이 되었거나 중앙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교육청 직영 청소년수련시설에 채용된 경우이다. 이때의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과 같은 시설 이외에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타부처 시설 및 학생교육원과 같은 교육청 산하 시설도 포함된다.

다섯째, 일반행정직이지만 청소년육성업무에 장기 근속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2) 새로운 선택, 새로운 고충

청소년지도자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으로 전환되거나 임용된 이후 긍정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예를 들어,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어 교육에 몰두 할 수 있다든가(K), 과거와는 달리 청소년육성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등의 사례를 볼 수 있다. 청소년지도업무가 아닌 청소년행정업무를 맡게 된 경우에 특히 청소년지도자로서의 민간경력이 청소년육성업무 수행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부심도 피력된다.

그 당시 10여명의 공무원이 근무하던 수련관에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배치지도사도 없었던 시절 수련활동 운영 업무를 나홀로 맡아...각종 청소년 행사를 기획하여 진행도 하는 등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지만, 몇 년 뒤 배치지도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업무 영역을 좀 더 넓혀 수련활동 및 행사 등을 활성화시키기 시작하였다(I).

일반공무원과는 다른 업무적 특성을 명확히 이해함으로써 청소년이라는 대상에게 꼭 필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을 한다(D).

전문성을 가지고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이 가능하고, 업무파악을 위한 업무공백 및 시행착오도 감소한다(F).

그러나 공무원 세계에 진입한 이후에는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대부분 승진과 보수에 있어서 일반행정직과의 차별을 경험한다. 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2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고, 5년마다 다시 채용절차 거쳐야 하는 등 고용상의 불안이 있으며, 승진의 기회를 얻지 못해 공무원이 된 이후에도 새로운 불만사항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관장직위는 인정받았지만, 무기계약직 형태로 고용승계가 되었다. 2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총 계약기간이 5년이 지나면 다시 채용절차를 거쳐야 함으로 고용의 안정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B).

일반임기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종료 시점에서 다시 채용공고를 통해 재채용 되어야 하는 불편함과 불안함이 있고, 더 시급한 것은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는 일부 청소년지도사는 2년 후에는 재채용이 안되기 때문에....(이 문제는) 중앙부처에서 해결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H).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상위 직급이 없어 홀대받는다(N).

일반공무원과 달리 승진이 없으며, 최장 5년간의 계약직으로 고용이 불안하다(R).

기대했던 만큼 많은 직무의 기획운영에 자율성이 적고, 민간보다 더 경직된 점이 임기제공무원의 한계점으로 사료된다(C).

전문경력관으로 근무하는 경우 승진기회 부족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한다(F).

청소년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하여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용직과 같은 처우가 만연한 것은 개선되어야 할 시급한 사안으로 사료된다(C).

저의 경우에도 2001년에 별정8급으로 입사하여 1급청소년지도사를 취득하고 경력이 별정직인사규정에 맞아 2004년에 7급으로 임용되었지만,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문경력관 나군(6급~7급)으로

근무하고 있어...공무원 후배들도 6급을 달고 계장(팀장)보직을 받고 있으나, 만년 주무관으로 근무 중에 있어, 간혹 퇴직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번 인사때는 한참 후배이고 나이라도 10년이나 아래인 여직원(행정7급)이 계장(팀장직대)으로 보직을 받아 1개월간 근무하고, 다시 주무관으로 발령이 난 해프닝도 있었다(I).

아직 계약직 형태로 청소년지도사의 고용형태가 불안합니다. 매년 계약서를 쓰고, 고용체계가 바뀌고 평가를 받고 하는 반복이 매우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아직은 계약직 형태로 신분상 미완성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면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과 구분이 소외감을 갖게 하고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업무적으로 청소년사업에 전담하게 하고 지자체행정사항은 주로 예산 집행관련 업무가 주가 될 것 같습니다 (P).

본인은 지방전문경력관 다군으로 재직 중으로 지난 공무원직종개편 당시 청소년지도사 자격소지자라는 이유로 행정직으로 전직하지 못하고, 전문경력관에 직군분류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직군분류를 함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소지 여부였는데 별정7급으로 재직중인 동료직원(청소년지도사 3급 소지자)은 전문경력관 나군(별정6~7급상당)으로 직군분류되고 동종동일업무를 업무를 보고 있는 본인의 경우는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소지라는 자격 전문성은 인정받지 못하고 단순히 현직급을 기준으로 직군분류를 해버리는 바람에 지방전문경력관 다군(별정8~9급상당)에 보임된 것이다. 또한 당시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일반직으로 전환되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는데 본인의 경우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소지자라는 이유로 전문경력관으로 임명되면서 승진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자격증의 전문성도 인정받지 못한 억울한 경우를 당한 것이다. 당시 개인적으로 행안부에 질의와 인사부서 담당자 면담 등을 거쳤던 가슴아프고 괴로웠던 경험이다. 이후 행안부 인사지침 변경으로 직군변경의 길이 생기긴 했지만 지방전문경력관이(청소년지도사) 지극히 소수직렬 인 탓에 관심밖으로 밀려 직군변경의 길은 요원하다(U).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직종전환의 욕구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승진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부터의 유일한 탈출구는 직종전환이다. 이는 결국은 청소년육성 전담업무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이탈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개인으로서 또는 한 명의 직업인으로서도 그렇거니와 공무원 조직을 위해서도 순환보직을 막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직종전환으로 순환보직을 받고자하는 경우가 많다(F).

별정 7급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다, 일정기간 장기근속한 별정직 직원을 승급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을 때 별정6급으로 임용(별정직의 특성상 승진이 아니라 의원면직 후 상위직급으로 발령내는 형태)되었고, 공무원법 개정으로 별정직에서 사회복지직으로 전환되었다(사회복지사 2급 자격이 있어야 사회복지 6급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증 전형시험의 형태)(L).

일반직으로 전환되니 노력하면 승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리고 미래를 기약할 수 있게 되었다(L).

일반직으로의 전환은 이미 2014년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시에 한 차례 있었다. 일부는 행정직으로 전환되고, 일부는 전문경력관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제도적인 차원에서 좋고 나쁘고의 문제를 떠나 직업인으로서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일반직 전환을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행정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를 피력하기도 한다.

공무원 직종개편시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두 가지로 개편되었습니다. 지방전문경력관과 지방행정공무원으로 나누어졌는데, 지방행정공무원으로 변경된 직원도 몇 분 있지만, 대다수의 육성전담공무원들은 전문경력관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전문경력관은 가, 나, 다 군으로 나뉘어져 승진의 기회를 얻기 힘들고, 공무원 사회에서도 왠지 소외감이 들기도 합니다(I).

승진기회의 차별에서만 불만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행정의 비효율성에 대한 불만도 있고, 직영시설 근무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도업무에 행정업무까지 추가되는 상황에 우려를 피력한다.

아직도 실적위주의 교육을 원한다는 것이 불합리...(K).

청소년지도사로서 공무원이 되면서 지도사 업무외에 행정업무까지 부여되어 청소년지도업무에 시간배분이 어렵다. 명확한 업무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S).

공공에서의 청소년활동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부족하다, 관리자의 이해와 설득과정이 상당히 어렵고 공공행정의 마인드로 청소년활동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접하게 되는 벽은 상당히 크므로 정책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C).

현장 실무자이지만 행정과 교육을 동시에 해야하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K).

현재는 시의 청소년업무를 정책적인 부분도 청소년지도사에게 이관을 하려고 하는데 현 시점에서는 인원(3명)이 수련활동업무와 더불어 일부 행정적인 업무로 인해 업무포화상태라서 업무이관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며, 인원충원은 현실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정원과 총액인건비를 넘어서고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H).

일부 대상자는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전문성에 대한 회의를 피력하기도 한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현업수행에 특별한 이점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육성업무의 전문성에 대한 이 같은 문제제기는 향후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어떻게 규정하고 관리할 것이냐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정책적인 부분과 행정적인 업무들은 오히려 행정직 공무원들이 청소년지도사보다 더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자녀를 키우고 있는 행정직 공무원들이 더욱 업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사회복지직과 비교를 많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사회복지직공무원도 멀지 않아 없어질 것...사회복지직이 일이 힘들고 고되다는 이유만으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 자리를 행정직 공무원들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다보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 대한 불만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보다는 청소년활동전문공무원이 더 맞다...지방자치단체의 학교 외 모든 청소년활동을 관리하고 조율하는 것이 옳다고 보며, 청소년활동에는 법에 명시된 특정 청소년단체나 종교단체,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청소년활동 모두가 포함되어야 한다(H).

청소년지도사가 전문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지도사들이 전문가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서 더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전문가가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수교육도 하고 전문교육도 하고 여러 교육도 있고 좋지만, 오히려 자격증 취득에 대한 강화부터 “청소년지도사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인식과 단합 그리고 산재해 있는 많은 청소년 유사기관들을 통폐합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H).

자격증 미소지가 청소년지도사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자격을 가진 경우와 별 차이가 없었다...오래 일했으니 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남보다 많은 일을 주어도 잘해내니 과부하가 될 때까지 계속 업무를 받기도 했다(L).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분명 청소년지도자들에게는 새로운 직업적 가능성을 열어주는 자리임에 틀림없지만, 공무원이 되었어도 직업적으로는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러한 제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가장 시급한 일은 청소년육성업무를 보다 전문화하는 일이다.

3. 종합

청소년지도자로서의 경력을 토대로 청소년육성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거꾸로 청소년육성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중에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직영시설이 늘어나면서 비록 임기제이지만 공무원이 된 숫자도 늘어나고 있으며,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여러 부처 산하의 국립시설에서 공무원으로 채용된 청소년지도사들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 자격이 없더라도 과거 별정직으로 청소년육성업무에 장기간 근무했거나 전문관이 나 전담직위로서 청소년육성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이들을 명확하게 행정적으로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이라고 명명할 수는 없지만, 무엇보다 이들의 숫자가 양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입직경로나 근무처도 다양 있다.

양적인 확대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첫째, 청소년육성업무를 전문적인 업무 영역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이다. 즉, 청소년행정을 보다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것이다. 둘째, 청소년지도사라는 자격증을 토대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입직의 가능성이 넓어졌다. 분명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기반으로 청소년지도나 청소년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지도자로서 뿐 아니라,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넓어졌다.

이들은 보다 안정적인 직업인이 되었다. 그리고 청소년행정업무에서의 전문성을 발휘함으로써 청소년업무의 전문성에 있어서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청소년육성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자리가 많아지고, 공무원 사회 진입에 성공하더라도 여전히 일반행정직에 비해 승진 등 인사에 있어서 차별이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한계에 부딪힌다. 공무원의 신분은 분명 청소년지도자보다는 보수나 신분에 있어서 보다 안정적이지만, 공무원

사회 내에서는 또 다른 장벽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다. 직영시설 근무자들은 대부분 업무상으로 청소년지도 업무를 하게 되지만, 청소년행정업무까지 겸하게 되거나 일반행정직과 갈등관계에 놓이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직업으로서의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또 하나의 가능성과 한계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단순히 직업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직업, 직종에서나 벌어질 수 있다. 문제는 직업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 못지않게 청소년육성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육성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면 자연스럽게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직업적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제 IV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제 IV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제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그간 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나 정책이 없었다. 그러는 가운데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으로 불릴만한 공무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책적으로 재조명하고, 연구도 진행해야 하는 시점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파악한 현황은 60여명에 불과하지만, 교육 및 기타 영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까지 포함하면, 100명을 족히 넘어선다. 물론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확산적으로 정의한다는 전제 하에서의 수치이다. 지방공무원을 넘어 국가공무원까지, 그리고 직급을 넘어, 시설에서의 청소년지도업무 담당자들을 모두 포함하고, 또 타부처 관련 시설이나 기관까지를 포함해야 가능한 것이며, 확산의 범위에 따라서는 더 많은 인력을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으로 볼 수도 있다. 일부 청소년육성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공무원은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들까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에 포함시킨다면, 가장 확산적인 의미의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 청소년육성업무 관련 전문직 공무원, 기타 청소년육성업무를 담당하는 학교,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청소년육성업무 담당부서 및 직영시설에서 청소년육성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확산적으로 정의하면,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제의 도입, 즉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질렬화하는 데는 이점이 없다.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제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의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제의 도입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추구하려는 어떤 소기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그렇다. 전문경력관이나 임기제공무원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엄밀히 말하면,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임용과 관련한 문제에서 동떨어진 문제일 수도 있다.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제가 도입되면, 부분적인 문제는 해소될 수 있지만, 사회복지전

담공무원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보면, 직렬을 만들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공무원 사회 내에서의 갈등관계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거나 임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전문성을 담보할 것이냐이다. 단순히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 소지 여부로만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소지한 여러 분야의 공무원들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전문성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수교육의 대상을 확대하고, 교육내용을 한층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노력은 자연스럽게 많은 청소년지도자들에게 생애경력개발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일로 이어진다.

2. 정책제언

결론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적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담공무원의 고유한 업무 영역을 명확히 해야 한다.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제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육성업무가 너무 일반적인 업무로 이해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면, 수련시설 관리·감독과 수련활동 신고제 업무 등 보다 구체적인 전문영역으로 확장하고, 그에 맞는 전문교육 과정을 만들어 가야 한다. 직무를 세분화하고, 직무별 전문성 제고를 위한 양성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타 직종의 경우처럼 문서나 업무 프로세스를 정확히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은 일정 부분 국가직무능력표준 NCS(National Competences Standards)사업을 통해서 구축될 것이다.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이 일반행정과는 달리 특수한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제정 사례를 늘려가야 한다. 대구시 수성구와 같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자체의 청소년육성업무에 대한 관심의 표명이다. 결국은 지자체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점차 조례제정 사례를 늘려갈 수 있도록 중앙부처가 청소년육성 전담기구나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임용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 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자체의 관심을 높일 수 있다.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임용이나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설치여부를 지자체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지자체의 사례를 늘려 가면, 자연스럽게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제가 현실화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보다 중요한 정책이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셋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처럼 청소년활동진흥법 상의 수련시설이나 청소년육성업무 담당 지자체 부서업무에 한정짓지 말고 다양한 부처 등 타영역의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확장된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모두 하나의 전달체계 안에서 관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전달체계 밖의 인력이라도 결국은 다양한 형태로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하는 것이니, 적어도 이들을 의식적으로 염두해두고, 보수교육이나 네트워크를 통한 협업 등의 방법으로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다음 항에서 언급할 전문보수교육과 관련있는 사항이다.

넷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연수가 필요하다.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결국은 전문성의 강화를 통해서 존재감을 키워갈 수 있다. 현재의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상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청소년수련시설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에 한정되어 있다(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복지시설 이외에 학교도 포함되어 있다.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도 향후 학교를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겠지만, 두 자격에 대한 보수교육 모두 그 대상을 확대해 갈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확장된 의미의 청소년육성업무 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대상의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는 2년(직전의 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2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5.4>

1.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및 같은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제10조의3(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는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다섯째, 청소년지도사 양성과정에서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임용과 업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비 청소년지도자들이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새로운 취업목표로 삼을 수 있도록 지도사 양성과정에서 필요한 교육과정이 편성되어야 한다. 일차적으로 청소년지도사 교육과정에 행정학, 법기초 등의 과목을 개설하고, 그 이후에는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시험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학이나 법기초 이외에 보다 전문적인 영역의 지식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지식들은 단순히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육성업무와 관련된 현장실무를 담당할 때도 필요하다. 어떤 기관에 취업하더라도 법과 행정은 기초지식이 되기 때문이다. 청소년관련법과 행정의 수준에서만 가르치면, 전문성의 영역은 좁아진다. 청소년지도자나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도 이 같은 내용들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법, 행정의 기초지식 습득을 통해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물론 보다 다양한 취업경로를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보수교육에서 민간경력자 채용과정 등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교육되어야 한다.

여섯째, 여성가족부는 지자체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제 실현을 위한 가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제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지만,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은 없다. 일단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는 보다 구체적인 전략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25조와 제26조의 개정 또는 실현을 위한 가시적 노력,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임용조례 제정 촉진,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노동조건을 안정화 노력 등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안들이다.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노동조건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문인력을 정규직화하거나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조치를 취하고, 공무원 복무 등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신분을 안정화(통일된 임금기준, 평등한 인사정책 등) 시키며, 업무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만의 노력으로 될 수는 없다. 공무원 인사 등의 제도개선은 기본적으로는 인사혁신처의 소관이지만, 여성가족부가 지자체별로 관련 조례제정 또는 인센티브 부여의 방법으로 선도해가는 방법도 있다.

끝으로,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임용을 확대해가는 현실적인 방안 이외에 본 연구의 후속연구로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생애과정을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의 생애과정, 그리고 예비 청소년지도자들의 졸업 후 취업경로 등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기반으로 한 인력들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지도인력 양성을 위한 미래전략을 구상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관계부처합동 (2012).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3~2017. 서울: 여성가족부.
- 강영배, 김기현, 노하연 (2014). 안전한 청소년 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방안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 김이배 (2014).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직렬통합 논의의 쟁점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6(3), 147-179.
- 김현철, 임희진, 민경석 (2103). 국가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 (2015).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 대전광역시 동구 (연도미상). 청소년 전문분야 공무원 일반직 전환(내부자료).
- 대전광역시 동구 (2015). 2015년 문화공보과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 법제처 (2015a). 청소년기본법. <http://www.moleg.go.kr/main.html>.
- 법제처 (2015b).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http://www.moleg.go.kr/main.html>.
- 법제처 (2015c). 사회복지사업법. <http://www.moleg.go.kr/main.html>.
- 법제처 (2015d). 아동복지법. <http://www.moleg.go.kr/main.html>.
- 서울특별시 (2013). 서울시 인재양성 기본계획(안). 서울: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2014a). 서울시 인사혁신 방안. 서울: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2014b). 서울특별시 인사과 내부자료. 서울: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2015). 2015년도 예산서. 서울: 서울특별시.
- 안전행정부 (2013a).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조직·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 서울: 안전행정부.
- 안전행정부 (2013b).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서울: 안전행정부.
- 안전행정부 (2013c).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안. 서울: 안전행정부.
- 안전행정부 (2013d). 지방 전문경력관 규정안. 서울: 안전행정부.
- 안전행정부 (2013e). 직종개편 세부추진방안. 서울: 안전행정부.

- 여성가족부 (2014a). 2014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4b). 2014년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서울: 여성가족부.
- 이경상, 최원기, 여영진 (2004). 청소년육성 전담기구 및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제도 구축방안 연구 (연구보고 04-R30).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최순중, 신명철 (2012). 효과적인 청소년정책전달체계에 관한 방안 연구 : 기존의 논의 분석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9(3), 77-94.
- 행정자치부 (2015).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세종: 행정자치부.

부 록

1.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현황 및
생애과정 조사지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3. 청소년기본법(일부조항)
4.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일부조항)
5. 사회복지사업법(일부조항)
6. 아동복지법(일부조항)
7. 공무원임용령(일부조항)
8. 행정직군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
9. 공무원임용시험령(일부조항)
10. 지방공무원법(일부조항)

부록 1.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현황 및 생애과정조사지

1.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이 되기까지의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1-1.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채용 이전의 청소년지도자 경력

연도 (월단위까지)	총 근무기간	소속 (직위, 직급)	담당업무	비고
예) 190xx. ~20xx.	()년 ()개월			
총괄	(년 () 개월			

1-2.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그리고 기타 전문자격취득 사항육성전담공무원 채용 이전의 청소년지도자 경력에 대해서 작성하여 주십시오.

취득연도	취득자격증(급수)	비고
예) 190xx		

1-3.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채용 이후 경력(직종개편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연도 (월단위까지)	총 근무기간	소속 (직위, 직급)	담당업무	비고
예) 190xx. ~20xx.	()년 ()개월			
총괄	(년 () 개월			

2. 1-1 항목과 관련하여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채용과정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시오.
(계기나 동기 또는 상황변화 등 정책적으로 참고가 될만한 사항이 있으면 함께 기술해 주십시오.)
3. 1-3 항목과 관련하여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채용이후의 경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시오. 소속부서에서 하고 있는 직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채용 이전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시오.
4.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필요성과 정책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고 계신 점을 적어주시시오.
5.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으로서 애로사항은 무엇인가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업무와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의 행정사항은 무엇인가요?
6.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채용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청소년지도자 양성과정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7.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업무의 안정화 또는 채용 확대 등을 위한 방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부록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제정) 2011.08.01 조례 제842호
(일부개정) 2012.03.30 조례 제869호
(일부개정) 2014.04.30 조례 제98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5조에 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수성구”라 한다)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3조(임용권자) ① 구청장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신규임용·전보·휴직·복직·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구청장은 행정수요와 구청 예산 범위내에서 필요한 인원을 고려하여 임용한다.

③ <삭제 2014.4.30 조례 제986호>

제4조(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역할 및 임무) ①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그 관할구역안의 청소년 및 다른 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청소년활동 및 복지에 관한 임무는 각호와 같다.

1. 청소년활동의 지원
2. 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3. 청소년 복지의 향상
4. 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예방
5. 청소년의 유익환경 조성
6. 청소년의 유해환경의 규제

③ 관계행정기관,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임용형태)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5에서 규정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4.4.30 조례 제986호>

제6조(지역제한)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시험공고일 해당 연도 1월1일 기준으로 대구광역시에 3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한다.

제7조(임용자격 등) [제목개정 2014.4.30 조례 제986호]

- ①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개정 2012.3.30 조례 제869호)
- ②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채용자격, 채용절차, 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관련규정을 따른다.<개정 2014.4.30 조례 제986호>

제8조(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등) [삭제 2014.4.30 조례 제986호]**제9조(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삭제 2014.4.30 조례 제986호]**제10조(시험위원의 임명)** 구청장은 시험 출제 및 채점, 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후단삭제 2014.4.30 조례 제986호>

1. 청소년육성 직무에 관한 전문가 및 대학교수
2. 청소년육성에 대한 시험출제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청소년육성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제11조(근무상한연령 및 당면 퇴직) [삭제 2014.4.30 조례 제986호]**제12조(직권면직)** [삭제 2014.4.30 조례 제986호]**제13조(근무성적의 평정)** [삭제 2014.4.30 조례 제986호]**제14조(신규임용 최저연령)** [삭제 2014.4.30 조례 제986호]**제15조(전보)**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임용권자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16조(교육훈련)**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한다.

제17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이 법 제6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 제2항 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당해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 ② 법 제63조 제2항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18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 한다.<개정 2014.4.30 조례 제986호>

② 휴직한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4.4.30 조례 제986호>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19조(시간제 근무) ① 구청장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법 제25조의 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간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14.4.30 조례 제986호>

제20조(징계) [삭제 2014.4.30 조례 제986호]

제21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삭제 2014.4.30 조례 제986호]

제22조(수당) 위원회 위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4.30 조례 986호>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3.30 조례 제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86호, 2014.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3. 청소년기본법(일부조항)

[시행 2015.9.23.] [법률 제13370호, 2015.6.22., 일부개정]

제25조(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읍·면·동 또는 제26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 기구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관할구역의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3.24.]

제26조(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설치)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사무 범위,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3.24.]

부록 4.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일부조항)

[시행 2015.10.22.] [여성가족부령 제79호, 2015.10.22., 타법개정]

제10조의2(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는 2년(직전의 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2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5.4.>

1.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및 같은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연기신청서에 연기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4.>
1.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수행, 질병, 해외체류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가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을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단체(이하 "활동진흥원등"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5.5.4.>
- ⑤ 보수교육의 교육과목, 교육방법 및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활동진흥원등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20.]

부록 5. 사회복지사업법(일부조항)

[시행 2015.11.21.] [법률 제12618호, 2014.5.20., 타법개정]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2급·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14조(사회복지 전담공무원) 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제15조에 따른 복지사무 전담기구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하 "복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복지전담공무원은 그 관할지역에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 실태 및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부록 6. 아동복지법(일부조항)

[시행 2015.9.28.] [법률 제13259호, 2015.3.27., 일부개정]

- 제13조(아동복지전담공무원)** ①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②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전담공무원은 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조치,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확인 및 지도·감독 등 지역 단위에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 ④ 관계 행정기관, 아동복지전담기관,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단체(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전담공무원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부록 7. 공무원임용령(일부조항)

[시행 2015.11.19.] [대통령령 제26653호, 2015.11.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4., 2012.1.26., 2013.2.20., 2013.3.23., 2014.1.10., 2014.11.19., 2015.9.25.>

1.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속 장관"은 다음과 같다.

가. 중앙행정기관인 부·처·청의 장과 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 및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를 포함한다), 대통령경호실장, 감사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국무총리비서실을 포함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소속 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시·도의 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소속 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다. 시·도 및 자치구·시·군에서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소속 장관은 농촌진흥청장으로 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관의 소속 장관은 법률에서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가 된다. 이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가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1)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다고 인정하여 인사혁신처장이 가목 중에서 지정하는 기관의 장
- 2) 인사혁신처장이 1)에 따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4. "추서"(追敘)란 사망한 사람을 사망 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5. 법 제4조제2항, 제28조제2항제9호 또는 이 영에서 "연구직렬"이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의 각 직렬을 말하며, "기술직렬"이란 이 영 별표 1의 기술직군의 각 직렬과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1 제2호의 각 직렬을 말한다.

6. "민간근무휴직"이란 공무원이 민간 부문의 업무수행 방법, 경영기법 등을 습득하고, 민간 부문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민·관 간 이해 증진 및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제50조에 따른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것을 말한다.

7. "필수보직기간"이란 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기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9.8.]

제3조(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직급 및 직위의 명칭과 임용 등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0.>

③ 삭제 <2013.11.20.>

④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일반직공무원은 별표 2의 우정직군 공무원(이하 "우정직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되, 그 계급은 우정1급부터 우정9급까지로 구분한다. <신설 2013.11.20.>

⑤ 우정1급 및 우정2급은 일반직 5급에, 우정3급·우정4급·우정5급 및 우정6급은 일반직 6급에, 우정7급은 일반직 7급에, 우정8급은 일반직 8급에, 우정9급은 일반직 9급에 각각 상당한다. 이 경우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급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당하는 계급의 우정직공무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3.11.20.>

[전문개정 2009.9.8.]

부록 8. 공무원임용시험령(일부조항)

[시행 2015.12.30.] [대통령령 제26820호, 2015.12.30., 일부개정]

제3조(시험실시기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은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고, 그 밖의 시험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이 「공무원임용령」 제8조에 따라 수립한 인력관리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9.10., 2011.4.4., 2011.11.1., 2012.11.27., 2013.2.20., 2013.3.23., 2013.12.4., 2014.11.19., 2015.5.6.>

1. 5급 이상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5급 공무원에의 승진시험
 2. 교정·보호·검찰·마약수사·출입국관리·행정·세무·관세·사회복지·감사·공업(일반기계·전기·화공 직류를 말한다)·농업(일반농업 직류를 말한다)·시설(도시계획·일반토목·건축·교통시설·도시교통설계 직류를 말한다)·전산 직렬의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
 3. 외무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 및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개경쟁 시험(이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이라 한다)
 4. 5급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5.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7급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실시권을 「공무원임용령」 제5조에 따라 임용권이 위임된 소속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상급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9.10.>
-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후보자의 등록 및 임용 추천과 시험의 공동·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2.6.29.>
- ④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긴급하게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거나 특수한 분야 또는 특정 직위의 인력을 선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1.4.4., 2011.11.1., 2013.3.23., 2014.11.19.>

부록 9. 지방공무원법(일부조항)

[시행 2015.12.29.] [법률 제13634호, 2015.12.29., 일부개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11.]

부록 10. 행정직군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

(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1항 관련 [별표1] <개정 2015.9.25>)

직군	직렬	직류	계급 및 직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행정	교정	교정	부이사관	서기관	교정관	교감	교위	교사	교도
	보호	보호			보호 사무관	보호 주사	보호 주사보	보호 서기	보호 서기보
	검찰	검찰			검찰 사무관	검찰 주사	검찰 주사보	검찰 서기	검찰 서기보
	마약 수사	마약 수사			마약수사 사무관	마약수사 주사	마약수사 주사보	마약수사 서기	마약수사 서기보
	출입국 관리	출입국 관리			출입국 관리 사무관	출입국 관리 주사	출입국 관리 주사보	출입국 관리 서기	출입국 관리 서기보
	철도 경찰	철도경찰			철도 경찰 사무관	철도 경찰 주사	철도 경찰 주사보	철도 경찰 서기	철도 경찰 서기보
	행정	일반행정			행정 사무관	행정 주사	행정 주사보	행정 서기	행정 서기보
		인사조직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운수							
		고용노동							
		문화홍보							
		교육행정							
	회계								
	직업 상담	직업 상담				직업상담 주사	직업상담 주사보	직업상담 서기	직업상담 서기보
	세무	세무				세무 주사	세무 주사보	세무서기	세무 서기보
	관세	관세				관세 주사	관세 주사보	관세서기	관세 서기보
	사회 복지	사회 복지			사회복지 사무관	사회복지 주사	사회복지 주사보	사회복지 서기	사회복지 서기보
	통계	통계			통계 사무관	통계 주사	통계 주사보	통계 서기	통계 서기보
	사서	사서			사서 사무관	사서 주사	사서 주사보	사서 서기	사서 서기보
	감사	감사		감사관	부감사관	감사 주사	감사 주사보	감사 서기	감사 서기보
	방호	방호				방호 사무관	방호 주사	방호 주사보	방호 서기
		경비							

2015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5-R01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및 개선방안 / 이경상 · 조용하
- 15-R0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Ⅱ / 최창욱 · 문호영 · 김진호
- 15-R02-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Ⅱ - 기초분석보고서 / 최창욱 · 문호영
- 15-R03 청소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소셜 미디어 활용 연구 / 배상률
- 15-R04 지역사회 청소년의 인성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 임지연 · 김영석 · 김혁진
- 15-R05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재정립 및 정체성 확립 방안 연구 / 김형주 · 김정주 · 김인규
- 15-R06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 방안 / 김기현 · 황세영 · 이경자 · 강영배
- 15-R07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황여정 · 김정숙 · 이수정 · 변정현
- 15-R08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 김지경 · 정연순
- 15-R09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 백혜정 · 송미경
- 15-R10 아동 · 청소년 · 가족 보호체계 개선방안 연구 / 김지연 · 좌동훈 · 박세경 · 한미경
- 15-R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 : 총괄보고서 / 김영지 · 김희진 · 이민희 · 박선영
- 15-R1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 : 청소년 인권의식과 시민적 권리의 경험에 대한 관련 요인 분석 / 김진석
- 15-R11-2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 : 2015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영지 · 김희진
- 15-R1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총괄보고서 / 김영한 · 오해섭 · 성윤숙 · 정윤미
- 15-R12-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운영
과 추진전략 개발 / 오해섭 · 김세광
- 15-R12-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진단 /
성윤숙 · 홍성호
- 15-R12-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청소년정책모니터단 운영 연구 / 김영한 · 정윤미
- 15-R13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Ⅲ : 총괄보고서 / 김현철 · 모상현 · 오성배
- 15-R13-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Ⅲ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현철 · 모상현
- 15-R1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Ⅱ : 위기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
이유진 · 박선영
- 15-R14-1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Ⅱ :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모형 개발 및 창업 활성화 방안 /
강경균 · 이춘우
- 15-R15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Ⅰ / 김경준 · 김태기
- 15-R15-1 외국의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 비교 연구 / 이진영 · 장안리 · 김판준 · 임영연 · 정호원 · 성일광
- 15-R16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Ⅵ : 사업보고서 / 이종원 · 서정아 · 정은주 · 강현철 · 한영근
- 15-R16-1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Ⅵ : 데이터분석보고서Ⅰ -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이 청소년 행복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 / 서정아

15-R16-2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Ⅵ : 데이터분석보고서2 - 청소년의 또래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 / 정은주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1-0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 윤철경·최인재·유성렬·김강호 (자체번호 15-R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1-02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 전영실·김지영·박성훈 (자체번호 15-R17-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1-0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 조사결과자료집 / 윤철경·최인재 (자체번호 15-R17-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최홍일·진성희·김균희 (자체번호 15-R1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초·중·고등학생용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최홍일·진성희·김균희 (자체번호 15-R18-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대학생용 기초통계 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최홍일·진성희·김균희 (자체번호 15-R18-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청소년의 사회참여 역량 측정도구 개발 및 분석 연구 / 김태준·오민아·이영훈 (자체번호 15-R18-3)

연구개발적립금

15-R19 동북아 청소년정책 국제비교 연구 / 김정숙·김기현·황세영

15-R20 대학비진학 청소년 역량개발 정책사업 추진방안 연구 / 윤민중·김기현·한도희

수 시 과 제

15-R2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연구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제 개발 기초연구 / 김영지·김희진

15-R22 '사회적 통증' 개념을 통한 청소년 정신건강 이해 : 중독과 자살생각 / 장근영·전우영

15-R23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 황세영·조성화

15-R23-1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워크북 / 황세영·조성화·곽정난·김경전·현명주

15-R24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현황과 전망 : 생애과정 연구를 중심으로 / 김현철

15-R25 동북아 청소년연구 분류체계 구축 연구 / 김정숙·김기현

15-R2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안과 의제 / 김지연

- 15-R27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운영 실태와 확대방안 연구 / 좌동훈
- 15-R28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청소년 삶의 질 정책방안 연구 / 김기현 · 좌동훈 · 강경균 · 김정숙 · 황세영 · 문호영 · 윤민중
- 15-R29 의료형 청소년쉼터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 김지연
- 15-R30 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체험활동 연계모형 평가 연구 / 김기현 · 김형주
- 15-R31 국가근로장학사업으로서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운영체계의 개선 - 대학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 김지경 · 윤민중
- 15-R32 청소년운영위원회 연간활동 효율화 방안 연구 / 최창욱 · 좌동훈
- 15-R33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기준 개발 / 이경상 · 장원경
- 15-R34 청소년분야 ODA 사업추진 기본방향 마련 / 최창욱 · 한도희
- 15-R35 생애주기에 따른 아동 · 청소년 · 청년 연령구분 실태와 방향 / 문호영 · 최창욱

수 탁 과 제

- 15-R36 청소년활동 중장기 수요 및 공급기반 조성 연구 / 김영한 · 유성렬 · 임성택 · 주동범
- 15-R37 2014년도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적용 게임물 평가 / 배상률 · 유홍식 · 김동일
- 15-R38 201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 · 이유진 · 김영한
- 15-R39 2015년 행복교육 학생모니터단 운영 / 오해섭 · 최홍일
- 15-R40 가출 청소년 실태 및 청소년쉼터 중장기 발전방안 / 백해정 · 좌동훈
- 15-R41 청소년 연계서비스 시범사업 개선방안 연구 / 서정아 · 전영기
- 15-R42 청소년 디지털 매체 및 서비스 이용실태 연구 / 성윤숙 · 김경준 · 김희진
- 15-R42-1 청소년의 디지털 역기능 사례조사 및 모니터링 연구 / 성윤숙 · 김경준 · 김희진
- 15-R43 201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최인재 · 이경상 · 김정숙 · 장근영
- 15-R44 청소년 · 가족 연계서비스 시범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 서정아 · 조성은
- 15-R45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6~2018)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김지경 · 최인재
- 15-R46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위상 정립방안 모색 연구 / 김현철 · 최창욱
- 15-R47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방안 / 김지경 · 이상준
- 15-R48 나라사랑 체험프로그램 효과 분석 / 최창욱 · 성은모 · 정윤미
- 15-R49 2015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김기현
- 15-R50 2025 청년 전망 및 향후 정책 추진과제 연구 / 김기현 · 김형주 · 박성재 · 민주홍 · 김종성
- 15-R51 청소년 권리증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 김영지 · 모상현 · 이용교
- 15-R52 성남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방안 연구 / 김영지 · 모상현
- 15-R53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5 / 김희진 · 이종원 · 유성렬 · 김진석
- 15-R54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연구 / 최창욱
- 15-R55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강화를 위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 김형주 · 김정주 · 김혁진
- 15-R5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 관리체계 개선 및 2015년 사업 효과 만족도 조사 연구 / 김영지 · 정은주 · 김정주
- 15-R56-1 삼성전자 임직원과 함께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성과 분석 및 만족도 조사 연구 / 정은주

- 15-R57 과학적 실행 중심 모형기반 생명과학 교수학습 디자인 실험연구 / 황세영
- 15-R58 2015년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효과성 및 만족도 연구 / 황세영 · 윤민중
- 15-R59 휴먼네트워크 협력기관 실태조사 / 성은모 · 강경균
- 15-R60 청소년의 'X-질문' 발굴 및 개선방안 연구 / 강경균
- 15-R61 청소년활동안전센터 중장기 계획 연구 / 김영한 · 임지연
- 15-R62 휴먼네트워크 코디네이터 전문성 강화 연구 / 성은모 · 서동인
- 15-R63 아산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따른 연구 / 김영한 · 오해섭 · 정윤미
- 15-R64 서울시 청소년시설 운영실적 평가 / 모상현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5-S01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연구결과 공개 보고회 (1/19)
- 15-S02 온라인 도움행동의 원인 (2/9)
- 15-S03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1권역 (2/23~27)
- 15-S04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2권역 (2/23~27)
- 15-S05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3권역 (2/23~27)
- 15-S06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4권역 (2/23~27)
- 15-S07 2014년도 제1차 연구성과발표회 (3/12)
- 15-S08 2014년도 제2차 연구성과발표회 (3/13)
- 15-S09 일본진로교육의 현황과 과제 (3/31)
- 15-S10 2015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 (4/16)
- 15-S11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위원 워크숍 (4/28)
- 15-S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교육 (4/29)
- 15-S13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1권역 (5/12~13)
- 15-S14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2권역 (5/18~19)
- 15-S15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3권역 (5/26~27)
- 15-S16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4권역 (5/28~29)
- 15-S17 교육 소외와 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 후 청소년 정책 : 지역 방과 후 청소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5/18~19)
- 15-S18 2015년 꿈키움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5/21)
- 15-S19 2015 청소년 문화와 안전 국제포럼 (6/4)
- 15-S20 2015년 대안학교 진로직업교육 컨설팅위원 워크숍 (6/4)
- 15-S21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 (6/26)
- 15-S22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II 데이터 분석 세미나 (7/2)
- 15-S23 2015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등 연수 (7/8~10)
- 15-S2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관계자 워크숍 (7/9~10)
- 15-S25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1권역 (7/27~28)
- 15-S26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2권역 (7/28~29)
- 15-S27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3권역 (8/3~4)

- 15-S28 2015년 제2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7/30~31)
- 15-S29 청소년의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방안 및 추진전략 (7/22)
- 15-S3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해외사례 (8/11)
- 15-S31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담당자 교육 워크숍 (8/21)
- 15-S32 제2회 동북아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의 성인기로의 이행 (9/17)
- 15-S33 민족정체성 확립의 역량을 미치는 4가지 주요요소 : 1960년대 및 70년대 초와 80년대 및 90년대 초에 자라난 젊은세대의 비교 (9/14)
- 15-S34 대안교육 국제포럼 2015 (9/16)
- 15-S3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성과발표회 (9/18)
- 15-S36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디지털 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10/19)
- 15-S37 제5회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10/23)
- 15-S38 한-중 국제세미나 (10/27)
- 15-S39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워크숍 -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현황과 전망 - (10/21~22)
- 15-S40 제4회 동북아청소년정책포럼 - 한·러 차세대 전무가 대화 : 동북아미래를 위한 한·러 청소년(차세대) 정책 협력 (11/17)
- 15-S41 국회다정다감포럼 -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과제와 방향 (11/5)
- 15-S42 2015년 시·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업무 담당자 워크숍 (11/26~27)
- 15-S4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심화워크숍 (12/17~18)
- 15-S44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기준 개발 (12/10)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1호(통권 제7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2호(통권 제77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3호(통권 제78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4호(통권 제79호)

기 타 발 간 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9호 :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0호 :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1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2호 : 기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3호 :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4호 :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9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0호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1호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연구Ⅳ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2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Ⅰ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3호 : 청소년의 휴대전화 보유 현황과 이용빈도, 휴대전화 의존도
- KCYPS 초1 패널 제5차년도 조사결과 분석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4호 : 청소년 체험·여행·문화활동과 삶의 만족도
- KCYPS 초4 패널 제5차년도 조사결과 분석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5호 : 초등학교생 삶의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 분석 - KCYPS 초4 패널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호 : 지금, 이 시대 왜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에 주목해야하는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호 : 아동, 청소년 보호체계 쟁점 사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3호 :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과 정체성, 재정립이 필요한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4호 : 동북아 청소년연구 분류체계 구축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5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안과 의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6호 :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운영 실태와 확대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7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체계화의 필요성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8호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청소년 삶의 질 정책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9호 : 그 나라는 어때? 세계의 청소년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0호 : 의료형 청소년쉼터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1호 : 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체험활동 연계모형 평가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2호 : 청소년의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 이용 현황과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해외사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3호 : 지역사회의 청소년 인성교육 실태와 과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4호 : 청소년의 기업가정신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여건 조성 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5호 : 청소년 나눔활동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6호 : 동북아지역 청소년 국제교류 정책 및 사업 현황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7호 : 국가 근로 장학사업으로서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운영체계의 개선
-대학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8호 : 재외동포청소년의 주요 이슈와 지원 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9호 : 청소년운영위원회 연간활동 효율화 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0호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기준 개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1호 : 생애주기에 따른 아동·청소년·청년 연령구분 실태와 방향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2호 : 청소년분야 ODA 사업 추진 기본방향 마련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3호 : 학령기에 학교를 나온 청소년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4호 : 다문화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청소년현안 Blue Note 봄호
청소년현안 Blue Note 여름호
청소년현안 Blue Note 가을호
청소년현안 Blue Note 겨울호

연구보고 15-R24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현황과 전망
: 생애과정 연구를 중심으로**

인 쇄 2015년 12월 24일

발 행 2015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경성문화사 전화 044)868-3537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연구보고 15-R24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현황과 전망:

생애과정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0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